
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76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30.

발 의 자 : 박정하 · 유용원 · 조은희
안철수 · 이소희 · 김은혜
서천호 · 엄태영 · 정성국
우재준 · 서범수 · 김태호
김희정 의원 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이스포츠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이스포츠대회 개최 건수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, 이로 인해 선수, 관계자 및 관람객 등 다수의 인원이 행사장에 밀집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의 개최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, 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,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개최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불명확한 실정임.

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의 밀집하는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의 개최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·점검 시행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,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

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
(안 제11조의2 신설).
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이스포츠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(이하 “이스포츠행사”라 한다)를 개최하려는 자는 이스포츠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스포츠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·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행사 안전관리계획의 내용,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·점검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11조의2(이스포츠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(이하 “이스포츠 행사”라 한다)를 개최하려는 자는 이스포츠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스포츠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·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행사 안전관리계획의 내용,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·점검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